

1. 의결주문

자치경찰사무 및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990호, 2021. 3. 30. 일부개정)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, 1기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.

또한 1기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일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의 경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.

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는 협의체를 설치하며,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무적으로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**초**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

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추천 기준을 마련(안 제4조의3)

나.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‘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’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 설치 근거 신설

- 1)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협의체를 설치하고, 이때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·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 역시 시·도에 두도록 규정(안 제4조의4제1항)
- 2) 협의체 위원장은 독립적·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, 법률상 직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있으며 특히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당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협의체 위원장으로 규정(안 제4조의4제2항)
- 3)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「경찰법」 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간 성별·경력별 균형을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, 협의체에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조율 노력을 하도록 규정(안 제4조의4제3항)

다.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,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(안 제9조제6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국가경찰위원회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) 국가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.

1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2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③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성별·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항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9조제7항”을 “제9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국가경찰위원회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) 국가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.</u> <u>1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/u> <u>2. 추천하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4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</u> <u>③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성별·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</u>

제9조(추천위원회의 추천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⑥ (생략)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<u>제6항</u>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. 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 ① (생략) ② 추천위원회는 <u>제9조제7항</u>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	<u>한다.</u> 제9조(추천위원회의 추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</u>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 <u>제7항</u>----- -----. 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9조제8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